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관련 700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12월 17일
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·한정후견·특정후견제도가 도입되도록 「민법」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개정된 「민법」에서의 성년후견·한정후견·특정후견제도를 반영함 (안 제8조)

3. 참고 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(의원발의안)	수 정 안(전문위원실안)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전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고,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이바지하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
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미성년자·금지산자 또는 한정재산자 3.~6. (생략) ②~③ (생략)	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· <u>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 3.~6. (현행과 같음) ②~③ (현행과 같음)	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(개정안과 같음) 1. (개정안과 같음) 2. ----- · <u>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</u> 3.~6. (개정안과 같음) 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사업계획 예산과 결산) ①~③ (생략)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⑤~⑦ (생략) ⑧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	제25조(사업계획 예산과 결산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요구할 수 있다.</u> ⑤~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----- <u>요구할 수 있다.</u>	제25조(사업계획 예산과 결산) ①~⑧ (개정안과 같음)
제26조(회계의 원칙) ① (생략) ② 공사는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<u>계리할 수 있으며</u>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회계규정」에 따른다. ③~④ (생략)	제26조(회계의 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회계 처리할</u> ----- ----- ----- ③~④ (현행과 같음)	제26조(회계의 원칙) ①~④ (개정안과 같음)
제38조(업무상황 공표)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 상하반기 각각 <u>1회씩</u>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38조(업무상황 공표) ① ----- ----- <u>한 번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	제38조(업무상황 공표) ①~②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기여하기”를 “이바지하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“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4항 및 제25조제8항 중 “명할”을 “요구할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처리할”을 “회계 처리할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1회씩”을 “한 번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전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고,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이하 지하기 ----- ----- ----- -----.
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미성년자 · <u>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</u> 3.~6. (생략) ②~③ (생략)	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· 피성년후견인 ·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3.~6. (현행과 같음) 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사업계획 예산과 결산) ①~③ (생략)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<u>명할</u> 수 있다. ⑤~⑦ (생략) ⑧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<u>명할</u> 수 있다.	제25조(사업계획 예산과 결산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요구할 수 있다. ⑤~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요구할 수 있다.
제26조(회계의 원칙) ① (생략) ② 공사는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<u>계리할</u>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회계규정」에 따른다. ③~④ (생략)	제26조(회계의 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회계 처리할 ----- -----. ③~④ (현행과 같음)
제38조(업무상황 공표)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하반기 각각 <u>1회씩</u>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38조(업무상황 공표) ① ----- 한 번씩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